

2007. 3. 23.(금)

제13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

심사보고서

- 제천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 -

자치행정위원회

제천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7. 3. 6. 제천시장

나. 회 부 일 자 : 2007. 3. 6.

다. 상 정 일 자 : 2007. 3. 12.(제134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회의)

2. 제안설명요지 (제안설명자 : 자치운영팀장 이춘호)

가. 제안사유

- 제천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의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정착 할 수 있도록 함.

나. 주요내용

- 거주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.
 - 거주외국인은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함.
 - 관내에 거주 외국인들에 대하여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, 거주외국인 수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.
 - 외국인 뿐만아니라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와 기타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도 지원대상에 포함.
 - 한국어 · 기초생활 적응교육, 고충 · 생활 · 법률 · 취업상담,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체계 확립, 문화 · 체육행사 개최 등을 지원.
 -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“자문위원회”를 구성운영 함.
 - 외국인 지원 민간단체에 대하여 행 · 재정적 지원 할 수 있음.

- 매년 5월 21일(UN이 정한 다문화의 날)이 포함된 주를 외국인 다문화 주간으로 정하여 기념식, 문화·예술·체육행사 및 외국인 관련행사 실시.
- 시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외국인에 대하여 포상을 수여할 수 있으며, 명예시민으로 예우할 수 있음.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김석윤)

- 본 조례안은 제천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정착생활을 함에 있어 환경에의 조속한 적응과 생활편의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행자부의 준칙에 준하여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입니다.
-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한바, 안 제3조 내지 6조에 거주외국인은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필요예산을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, 안 제 7조 내지 제 11조에는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"제천시 외국인지원시책 자문위원회"를 설치하므로써 각계각층의 깊이있는 의견이 폭넓게 반영되도록 규정되었습니다.
- 현재 우리시 외국인 수는 2003년 12월말 현재 539명(대만 163명, 중국 50명 등)에서 2006년도 12월말 현재 1,207명(대만 137명, 중국 547명 등)으로, 3년전 동기대비 2배가 넘는 224%에 이르는 외국인수가 증가 되었습니다.
- 이와같이 국내거주 외국인의 수가 급증함에 따라 관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적응을 돋는 것은 세계화 시대에 부응한 바람직한 방향이며, 사회통합에 기여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.
- 다만, 이 조례 제1조(목적)에서 "이 조례는 제천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" 에서 외국인 이라는 표현을 좀더 구체화 하여 "대한민국에 새로이 이주하여 적응이 필요한 외국인" 이라고 구체화하여 화교 등 우리나라에 오래 정착하여 한국인과 다를 바 없어

지원이 필요 없는 외국인은 배제함이 본 조례의 제정 목적에 부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4. 질의답변 요지

가. 질의요지

○ 외국인 뿐만아니라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와 기타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고 했는데 여기 외국인 내에 탈북자 새터민도 포함 되는지요? (양순경 의원)

○ 현재 미등록 외국인도 상당수가 있을것으로 판단되는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실 의향은 있으신지요? (김봉수 위원장)

나. 답변요지 (자치운영팀장 이춘호)

○ 새터민은 포함 시키지 않았는데 우리시에 24명정도 있습니다.
향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.

○ 현재 미등록 외국인도 상당수가 있을것으로 판단되는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실 의향은 있으신지요?

5. 소수의견

“없 음”

6. 토론요지

“없 음”

7. 심사결과

“원안가결”

8. 심사보고 붙임서류

○ 제천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 1부. 끝.